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허종식·김교흥·김정호

노종면 • 모경종 • 박선원

박성준 · 신영대 · 어기구

유동수 • 윤준병 • 이재관

정일영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도선(근거리)·여객선 (원거리) 및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·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·시행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각종 교통카드 관련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, 수상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선·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, 제10조

의2, 제10조의4, 제10조의5, 제10조의8, 제10조의10 및 제10조의11).

법률 제 호

###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"제9조까지"를 "제9조까지,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 및 제12조"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4제1항 후단 중 "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·관리하는 업체·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"를 "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·관 리하는 업체·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 다.

제10조의5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
- 6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가 수 리된 유·도선사업자

제10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"를 "조합,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, 「해운법」 제40조에 따른 해운단체 및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30조의2에 따른 유·도선안전협회"로 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 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제10조의10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 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제10조의11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의2(적용범위) 제2조제2호라         | 제4조의2(적용범위)         |
| 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면 제1조부터 <u>제9조까지</u> 에 한    | <u>제</u> 9조까지, 제10조 |
| 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             | 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 및 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2조</u>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제10조의2(교통카드 전국호환 기          | 제10조의2(교통카드 전국호환 기  |
| 본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            | 본계획의 수립) ①          |
| 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(互換)될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드 전국호환 기본계획(이하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"전국호환 기본계획"이라 한다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을 수립하여야 한다. <u>&lt;후단 신</u> |                     |
| <u>설&gt;</u>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 여야 한다.</u>      |
| ② · 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|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     |

제10조의4(교통카드 전국호환 특 제 정부문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철도 · 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·도의 관 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 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 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 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(이하 "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"이라 한다)을 수 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・관리하는 업체 • 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. <신 설>

② (생략)

제10조의5(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제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·운용

| 10소의4(교통카느 전국호환 특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부문계획의 수립) ①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상대중교통에 관             |
| 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       |
|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       |
| 한다.                   |
|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     |
|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      |
| 수립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      |
| 른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       |
| 를 운영·관리하는 업체·기관       |
|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       |
| 이를 활용할 수 있다.          |
| 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 |
| ]10조의5(대중교통운영자 등의     |
|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・운용       |

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기본계획·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대중교통수단·교통시설 등에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요금을 결제·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### <신 설>

제10조의8(교통카드데이터의 수 집 · 관리 및 제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<u>후단 신</u>설>

| 의무)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<br>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5.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라 면   |
| 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송사업       |
| 자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3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     |
| 고가 수리된 유·도선사업자       |
| 제10조의8(교통카드데이터의 수    |
| 집•관리 및 제출) ①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
| <u>이 경우 국</u>        |
| 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       |
| 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     |
|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     |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 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」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(이하 "대중교통운영자등"이라 한다)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,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(이하 "교통카드정 산사업자등"이라 한다)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# ③ (생략)

제10조의10(교통카드데이터 통합 저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 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·제출

|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    |
|--------------------|
| ②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조합, 같은             |
|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, 「해 |
| 운법」 제40조에 따른 해운단   |
| 체 및 「유선 및 도선 사업    |
| 법」 제30조의2에 따른 유・도  |
| 선안전협회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세10조의10(교통카드데이터 통합 |
| 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 등)    |
| ①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

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 이터 통합정보시스템(이하 "통 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 축·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

### ② ~ ⑥ (생 략)

제10조의11(교통카드데이터관리 지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·제출·제공 및 통 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② (생 략)

|   | 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  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  | 의 교통카드데이터에 관해서는  |
|   |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 |
|   |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  |
|  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 |
| 제 | 10조의11(교통카드데이터관리 |
|   | 지침) ①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
|   |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  |
|   | 상대중교통의 교통카드데이터   |
|   | 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  |
|   |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 |
|   | <u>여야 한다.</u>    |
|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|